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0. 6. 10.(수) 15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·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박성원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0년 5월 29일
- 회부일자: 2020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- 도내 미혼모·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, 임신·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 부진 해소를 위해 미혼모·부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습지원 및 교육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목적(안 제1조)
- 정의(안 제2조)
-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- 실태조사(안 제4조)
- 교육과정의 탄력운영과 휴학 보장(안 제5조)
- 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(안 제6조)
- 학습지원 등(안 제7조)
- 위탁교육(안 제8조)
-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(안 제9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도내 미혼모와 미혼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이나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습을 지원하려는 것임
-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교육감으로 하여금 미혼모·부 학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였고, 안 제5조에서 교육감으로 하여금 미혼모·부 학생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, 학교장에게는 미혼모·부 학생이 원하는 경우 유예 또는 휴학을 허가하도록 하였음
- 또한,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서 미혼모·부 학생들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지원 정책에 대하여 정하였음
- 본 조례안은 단순히 미혼모·부 학생들에 대한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막는데 그치지 않고, 각종 지원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까지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높다고 판단됨